

## 2024년 폐업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 추가 모집 공고

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은 폐업 소상공인의 안정적 사업정리를 돕고자 본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4년 6월 21일

(재)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

### 1 모집개요

- 사업명 : 폐업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
- 사업기간 : 예산 소진 시까지
- 지원대상 : 2022년 1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
  -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사업자등록증상 업체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이어야 함

▶ 임대차계약서(또는 입증가능서류) 제출이 가능하여야 하며 폐업에 따른 원상 복구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⇒ 철거·원상복구에 대한 내용 명시 필수

- 지원내용 : 폐업 시 소요되는 사업정리비용 지원(최대 200만원)
  - 폐업신고 및 철거·원상복구 완료 건에 한하여 지원
  - 지급방법 : 서류검토 및 보완완료 후 신청인 통장으로 직접 비용이체
- 지원제외 : 아래 제외사항에 1개라도 해당 될 시 지원 제외
  - 자가건물 사용자 :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
  - 임차인과 임대인이 가족인 경우
  - 기 수혜자 : 신청인(대표자)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
  - 유사 사업수혜자 : 점포철거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사업 수혜를 받은 경우

- 사업장 이전 :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
- 타 사업장 유지 : 2개 이상의 사업체<sup>1)</sup> 중 1개의 사업장만 폐업하는 경우  
1) 2개 이상의 사업체란 사업자등록증 상 같은 업태의 사업장을 말함

(예시)

- ▶ 한 사업자가 CU편의점과(도소매)과 GS편의점(도소매)을 운영 중에 CU편의점을 폐업한 경우 → 지원X
- ▶ 한 사업자가 콩나물국밥 가게와 영어학원을 운영 중에 영어학원을 폐업한 경우 → 지원O
- ▶ 한 사업자가 A커피숍(업태:휴게음식점)과 B커피숍(업태:일반음식점)을 운영중에 A커피숍을 폐업한 경우 → 지원O

## 2 지원절차

### □ 지원절차

사업공고	신청접수	서류검토	비용지급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홈페이지 (www.jbba.kr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예산 소진 시 까지(선착순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자격 요건 검토</li> <li>• 구비서류 및 증빙자료 일치 여부 확인</li> <li>• 필요시 서류보완 요청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신청인 통장으로 비용 이체</li> </ul>

※ 필요시 현장점검 진행

## 3 문의처 및 신청방법

- 문의처 :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 이채명담당관 ☎1588-0700
- 신청기간 : 2024. 6. 24. ~ 예산 소진 시까지
- 신청방법 : 이메일 접수(jbsosang@naver.com)

□ 제출서류

구 분	제출서류
별첨서식	• [서식1] 지원신청서
	• [서식2] 개인정보 수집·이용 제공 동의서
	• [서식3] 지원사업 이행 협약서
	• [서식4] 철거/원상복구 완료 확인서(임대인 도장 必)
증빙서류	• 폐업사실증명원
	• 사실증명(총사업자등록내역)
	• 임대차계약서
	• 신청인 통장사본
	• 이체확인증 또는 카드내역서
	• 견적서
	• 거래처(철거업체) 사업자등록증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<b>별첨서식[1~4] 출력 후, 작성 必</b></li> <li>◦ 신청서류 검토 후, 신청인에 소요비용 지급(최대 2,000천원)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<b>부가세 지원 제외, 견적서에 부가세 별도 표기必</b></li> <li>- 견적서 상 공급가, 이체내역(카드거래내역)기준</li> <li>- 사업정리비용 현금거래 시 지원 불가</li> </ul> </li> <li>◦ <b>사실증명이란 사업자등록사실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첨부必</b></li> <li>◦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상 공사 관련 업종이 되어있어야 하며, 견적서 상 구체적 철거공사 내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(미기재 시, 지급 불가)</li> <li>◦ 철거 인력 비용만 신청 경우 인력중개사무소를 통한 비용 지급만 인정 (공사일자, 공사인원, 비용 입금 및 지급 내역 추가 증빙)</li> </ul>	

## 4 유의사항 및 기타

### □ 유의사항

- ↳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체 대표자만 신청 가능
- ↳ 폐업신고 후 철거하여 철거·원상복구가 완료된 건에 한하여 지원
- ↳ 임대차계약서 표준양식 외에 서류상 임대목적물, 사용기간, 차임이 명시된 경우 인정
  - 임대목적물의 정확한 주소 및 임대 시작일과 종료일의 확인이 가능해야하며 무상임차의 경우 불인정
  - 직접계약 당사자 확인이 어려운 위탁계약형태 ‘수수료-차임’ 인정에 대한 법률관계 정립이 불확실한 수수료 매장계약 형태의 경우 대체서류 불인정

### □ 기타

- ↳ 지원신청업체는 신청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증빙서류를 자발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진흥원 담당자 요청 시 적극적으로 임해야 함
- ↳ 인증 및 증빙자료는 공고일 기준으로 유효하여야 함
- ↳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
- ↳ 지원신청서의 내용을 허위기재 또는 누락한 경우 지원취소·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(지원 이후 기간 포함)
- ↳ 사업공고 및 안내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지원신청 업체에 귀속됨
- ↳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진흥원 담당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서류 미제출 시 신청 포기로 간주함
- ↳ 신청기간은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사전 안내 없이 마감될 수 있음

**별첨** 지원제외 업종(소상공인 정책자금 용자제외 대상 업종)

표준산업분류	업종
33409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
46102 중	담배 중개업
46107 중	예술품,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
46209 중	잎담배 도매업
46333	담배 도매업 * 담배대용물(전자담배 등) 포함
46416, 46417 중	모피제품 도매업 * 단,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
46463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
47640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
47811 중	약국, 한약국
47859 중	성인용품 판매점
47911, 47912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,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
47993 중	다단계 방문판매
52991 중	통관업(관세사, 관세법인, 통관취급법인 등)
56211	일반유흥주점
56212	무도유흥주점
58122 중	경마, 경륜,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
58211, 58212, 58219 중	도박 및 사행성, 불건전 게임 S/W 개발 및 공급업
63999 중	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
64	금융업
65	보험 및 연금업
66	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
68	부동산업 * 부동산의 임대, 구매,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,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·분양, 임대 활동이 포함 * 단, 부동산관리업(6821),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(68221)은 신청가능 - 부동산관리업 :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(주거용·비주거용 부동산관리) -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: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,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
76390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
711, 712	법무,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
731	수익업

표준산업분류	업종
73904 중	감정평가업
75330	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(예: 탐정업, 흥신소 등)
75993	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
75999 중	경품용 상품권 발행업,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
86	보건업 * 단, 보건업(86) 중 유사의료업(86902)은 신청가능 * 87에 해당하는 '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'은 신청가능 * 안마원(96122)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 가능(통계청 기준)
91113	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
91121	골프장 운영업
9122 중	성인용게임장, 성인오락실, 성인PC방, 전화방
91221 중	성인용 게임장 운영업
91241 중	복권 판매업
91249	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
91291	무도장 운영업 (예: 댄스홀, 콜라텍 등)
9612 중	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*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- 안마원 개설신고증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제출 -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
96992	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(점집, 무당, 심령술집 등)
96999 중	휴게텔, 키스방, 대화방
기타	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, 향락 등 불건전 업종, 기타 국민보건,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,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